**국무원 제6회 행정인허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결정**

국발〔2012〕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2011년부터,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TV전화회의 배치와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요구에 따라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업무 부(部)간 연석회의는 행정허가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국무원 각 부문의 행정인허가항목에 대하여 여섯번째의 집중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엄격한 심사논증을 거쳐 314개의 행정인허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면밀히 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하며, 동시에 규정제도를 완벽히 하여 취소 혹은 조정된 행정인허가항목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후속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과업이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기존의 업무를 토대로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1. 행정인허가항목을 진일보 취소하고 조정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시장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으며 업계조직 혹은 중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서 퇴출해야 한다. 사후감독관리와 간접적 관리가 가능한 사항은 모두 사전인허가를 설정하지 아니하며,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어기고 부문 규정, 문건 등의 형식으로 설정한 행정인허가는 기한부 시정해야 한다. 인허가항목에 대한 능동적 정비시스템 구축을 탐색한다.

　　2. 행정인허가의 규범화 건설을 열심히 추진한다. 신규 설정한 인허가항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엄격히 법적 절차에 따라 그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대한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근거가 없는 경우 누구든지 규장, 문건 등의 형식으로 행정인허가항목을 설정하거나 형식을 바꾸어 설정할 수 없다. 비행정인허가항목의 설정과 관리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3. 사업단위 개혁과 사회조직 관리개혁을 강화한다. 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무성 업무와 관리서비스사항은 위임, 입찰, 아웃소싱 등의 방식으로 사업단위나 사회조직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관련 업계조직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업계조직의 규범화, 공개, 고효율 및 청렴 사무처리를 추진한다.

　4. 행정인허가서비스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정부사무센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 시, 현, 향의 4급 연동 정부사무 서비스시스템을 완벽히 하여 점진적으로 농촌과 지역사회까지 확대시킨다. 행정인허가 실적관리를 강화하며 온라인인허가, 온라인 합동인허가, 서비스 질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인허가 서비스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킨다. 인허가항목이 비교적 많은 부문은 정부사무청사 혹은 서비스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5. 행정인허가분야의 부패예방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인허가절차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광인허가”을 실시한다. 행정인허가 전자모니터링스템 보급을 강화하며, 인허가권한을 이용하여 기율을 위반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건을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6.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을 투자체제, 재무조세 및 금융체제, 사회체제와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긴밀히 결부시킨다. 정부와 기업, 정부와 사회 관계를 진일보 조정하고 규율하고 상하급 정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정부기구 설치와 기능설정을 한층 더 최적화하여 행정효율과 공공관리 서비스질을 제고시킨다.

　붙임：1. 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심사 인허가항목목록（171개）

　　　　2. 국무원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행정심사 인허가항목목록（143개）

　　　　　　　　　　　　　　　　　　　　　　　　　　　　　　　　국무원

　　　　　　　　　　　　　　　　　　　　　　　　　　　　　2012년 9월 23일

**첨부1:**

**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인허가항목 목록（171개）**

|  |  |  |  |  |
| --- | --- | --- | --- | --- |
| **순번** | **항목명칭** | **설정근거** | **실시기관** | **비고** |
| 30 | 외국국제도로운수경영자의 중국경내 상주대표기구 설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국무원령 제406호） | 교통운수부 |  |
| 31 | 외국선박검사기구의 중국경내 상주대표기구 설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 잠행규정〉반포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80〕272호） | 교통운수부 |  |
| 50 | 일부 HS코드 구리, 철강 자동수입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국무원령 제332호） | 상무부 |  |
| 51 |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기업의 중외합영기업 도급경영 및 합영기업 위탁경영관리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412호） | 상무부 |  |
| 53 |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제품이 수출쿼터, 허가증과 관련되는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국무원령 제346호） | 상무부 혹은 성급인민정부상무행정부문 |  |
| 61 | 재중 외국상주기구 및 주재원의 면세 수입 기동교통수단의 판매, 양도, 임대 혹은 타용도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해관총서 각 직속 해관 |  |
| 62 | 관세사 등록등기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 해관총서 각 직속 해관 |  |
| 64 | 영업정지 및 영업재개 세무등기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62호） | 세무기관 |  |
| 65 | 기업의 기술개발비 집중인출 인허가 | 《일부분 비행정인허가항목 보류에 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4〕62호） | 세무총국 혹은 그가 수권한 성급세무기관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시 세무기관 |  |
| 69 | 외국정부, 비영리기구 등의 재중국 대표기구 면세혜택 인허가  | 《일부분 비행정인허가항목 보류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4〕62호）《제4회 행정인허가항목 취소 혹은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07〕33호） |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  |
| 70 | 기업의 소득세 납세전 재산손실 공제 인허가 | 《일부분 비행정인허가항목 보류에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4〕62호） | 납세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직상급 세무기관  |  |
| 74 | 인증교육기구 설립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인감위 |  |
| 75 | 인증자문기구 설립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412호）《제5회 행정인허가항목 취소 혹은 관리 하급이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0〕21호） | 성급 질량기술감독부문 |  |
| 76 | 수입 원료용 고체폐물 및 수입 중고 가전제품의 선적전 검사검역기구 지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 질검총국 |  |
| 77 | 인가증서양식과 인가마크양식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국무원령 제390호） | 국가인감위 |  |
| 78 | 인증마크 비안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국무원령 제390호 | 국가인감위 |  |
| 101 |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분지기구의 운영자금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국무원령제478호） | 은감회 |  |
| 102 |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및 분지기구의 영업장소 변경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국무원령제478호） | 은감회 |  |
| 121 | 외국증권기구 주중대표기구의 총대표 자격 승인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증감회 |  |
| 129 | 보험회사 법률책임자의 자격 승인  |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 |  |
| 148 | 신약 시범표준의 정식표준 전환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60호）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신약 시범표준의 정식표준 확정 인허가는 더는 불수리 |
| 149 | 제2류 의료기기 임상 시범사용, 임상검증 인허가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 제276호） | 성급 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  |
| 150 | 제3류 의료기계 중 비 고위험 의료기기의 임상 시범사용, 임상 검증 인허가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제 276호）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
| 154 | 신용장, 추심, 선급금항목 수입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55 | 보세창고항목하의 위탁판매, 대리판매, 매입방식항목하의 수입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56 | 통관신고서류상 경영단위와 외환지불단위 불일치 수입 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57 | 외환반송항목하의 수입 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58 | 중계무역항목하의 수입 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59 | 격지 외환지불항목하의 수입 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60 | 심가공 이월항목하의 수입 외환지불 핵소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62 | 격지 외환지불항목하의 수입외환지불 비안 승인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외환국 분지국 |  |
| 163 | 수출단위에서 수령한 수출외환수입 핵소서 승인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외환국 및 그 분지국  |  |
| 164 | 수출단위의 수출배상 외환 승인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외환국 및 그 분지국 |  |
| 166 | 해외투자 외환자금(자산) 출처 심사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외환국 및 그 분지국 |  |
| 167 | 기업의 수입선급금 외환 반송 심사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제532호） | 국가외환국 및 그 분지국 |  |
| 169 | 외자은행, 외자지분참여 중국은행의 외환순이익 송금 혹은 인민폐 순이익의 외환구매 송금 심사 | 《보류가 확실히 필요한 행정심사인허가항목에 대해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국가외환국분지국 |  |

**첨부2:**

**국무원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한 행정인허가항목 목록（143개）**

**（1）관리권한 하부이관 행정인허가항목（117개）**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항목명칭** | **설정근거** | **실시기관** | **이양 후 실시기관** | **비고** |
| 5 | 외국인 자녀학교 설립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교육부 | 성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  |
| 19 | 환경보호（오염처리）시설 운영단위 을급, 임시자격 인정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환경보호부 |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 |  |
| 20 | 상품주택 예매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문 | 구를 설치한 시급,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문 |  |
| 30 | 외국인투자 도로여객운수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1 | 외국인투자 도시규획서비스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2 | 외국인투자 수출입상품검사검증기구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3 | 외국인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4 | 외국인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5 | 외국인투자 CD복제생산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6 | 외국인투자 인증교육 및 인증자문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7 | 국제 택배업무 관련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8 | 외국인투자 영업성 공연 중개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39 | 외국인투자 보험브로커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0 | 외국인투자 경매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1 |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소매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2 | 인터넷쇼핑에 전문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3 | 자판기 방식 상품판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4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11호）《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5 | 중외합작 시청제품 도매기업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1995년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6 | 외국인독자 선박회사 설립 및 변경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01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47 | 외국인투자 여행사(출국여행 제외)설립 인허가  | 《여행사조례》（국무원령 제550호） | 상무부 |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부문 |  |
| 51 |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제어시스템) 발행 최고한정액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현 급 이상 세무기관  | 구/현급 세무기관 |  |
| 53 |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등록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공상총국 성, 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시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  |
| 54 |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분지기구 설립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공상총국 및 그가 수권한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 |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 |  |
| 55 |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공상총국 및 그가 수권한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 |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 |  |
| 56 | 옥외광고 등록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지방급 이상 시 공상행정관리부문 |  |
| 62 | 화장품생산허가증 심사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국무원령 제440호） | 질검총국 | 성급 인민정부질량기술감독부문 |  |
| 63 |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재료 등의 식품 관련 제품 생산허가증 인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국무원령 제440호） | 질검총국 | 성급 인민정부질량기술감독부문 |  |
| 86 | 외국증권경영기구의 경내 외자주식상장업무 종사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증감회 | 증감회 파출기구 |  |
| 91 | 보험 종사인원의 자격 승인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 | 보감회 파출기구 |  |
| 93 | 보험대리 종사인원의 자격 승인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 | 보감회 파출기구 |  |
| 95 | 보험중개 종사인원의 자격 승인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 | 보감회 파출기구 |  |
| 111 | 제2, 3류의 의료기계 경영허가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제276） | 성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  |

**（2）심사부문을 감소한 행정심사항목（9개）**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항목명칭** | **설정근거** | **원 인허가부문** | **조정후 인허가부문** | **비고** |
| 6 | 보험자산관리회사 및 그 분지기구 설립과 종료(해산, 파산 및 분지기구 철수)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증감회 회동） | 보감회 |  |
| 7 |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중대사항 변경 인허가 | 《보류가 필요한 행정인허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 보감회（증감회 회동） | 보감회 |  |

**（3）합병한 행정인허가 항목（17개）**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항목명칭** | **설정근거** | **실시기관** | **합병 후 항목명칭** | **비고** |
| 7 | 수입약품 등록증서 심사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수입약품등록 |  |
| 8 | 수입약품 재등록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60호）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 9 | 기 취득 수입약품 증명문서의 변경 및 첨부파일 기재사항 보충 신청에 대한 승인 |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360호）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